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88
----------	------

제출년월일 : 2016년 4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맞도록 수수료에 대한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의 면제 대상에 인용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제목 변경함 (안 제6조)
 - 제6조(수수료의 면제) → 제6조(수수료의 감면)
- 나.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감면 규정을 본 조례에 신설함 (안 제6조제2항)
- 다.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6조제3항)
- 라. 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가 삭제되고, 맞춤형 급여체계의 도입으로 같은 법 제7조(급여의 종류) 개별급여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수수료의 면제 대상자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규정함 (안 제6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원안동의)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협의완료(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6. 1.21. ~ 2016. 2. 11.)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 등 자료 : 미첨부 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수수료의 면제”를 “수수료의 감면”으로 한다.

제6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의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10.(생략)	3.~10.(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세입·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개정안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재무국 세무과 박용진(2133-3439)